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65
----------	-------

발의연월일 : 2026. 7. 1.

발 의 자 : 이강일 · 박홍배 · 민병덕
이용우 · 김문수 · 이상식
김남근 · 이인영 · 백혜련
강준현 · 이훈기 · 송재봉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참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선거 준비 단계에서의 투표용지 인쇄·배분, 사전투표 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이송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설치하여 선거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용지 인쇄·배분, 선거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이송 등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선거관리감독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사무를 점검·평가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관리감독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정보통신학계·정보보호학계·통계학계·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언론인단체 및 시

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관리감독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정당의 당원은 선거관리감독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점검 등을 한다.

1. 투표 용지의 인쇄·보관·배분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의 작성·열람·확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전투표,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 전산화의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투표함의 봉인·보관·이송에 관한 사항

5. 제8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6. 제9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거 준비 과정에서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⑥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위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 투표용지 인쇄소, 투표함 보관소, 개표소, 선거 관련 정보시스템 시설 등 선거관리에 필

요한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위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소속, 성명과 출입 목적을 밝혀야 한다.

⑦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조사·점검 중 법령 위반 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⑨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선거일 후 60일까지 제5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및 제8항에 따른 시정 권고 사항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 받은 종합보고서를 제출 또는 보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⑫ 선거관리감독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자격요건·대우, 선거관리의 조사·점검의 절차·방법, 종합보고서의 작성·제출·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감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3조의2(선거관리감독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사무를 점검·평가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p> <p><u>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u> <u>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u></p> <p><u>2. 보궐선거등</u> <u>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u></p> <p><u>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관리감독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국</u></p>

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정보통신학계·정보보호학계·통계학계·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관리감독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정당의 당원은 선거관리감독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점검 등을 한다.

1. 투표 용지의 인쇄·보관·배분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의 작성·열람·확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전투표, 투표 및 개표 기

타 선거사무 전산화의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투표함의 봉인·보관·이송
에 관한 사항

5. 제8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6. 제9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
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거 준비 과정에서
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
는 사항

⑥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위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의 사무소, 투표용지
인쇄소, 투표함 보관소, 개표소,
선거 관련 정보시스템 시설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출
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
리감독위원회 위원은 그 신분
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
게 제시하고 소속, 성명과 출입
목적을 밝혀야 한다.

⑦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조사·점검 중 법령 위반 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⑨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선거일 후 60일까지 제5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및 제8항에 따른 시정 권고 사항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 받은 종합보고서를 제출 또는 보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⑪ 선거관리감독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자격요건·대우, 선거관리의 조사·점검의 절차·방법, 종합보고서의 작성·제출·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